
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|
| 481~482p | 개념, 공식-설명 | <p>481p</p> <p>3. 대량반복적인 업무 분야</p> <p>①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</p> <p>② 국민건강보험금 급여결정에 대한 심판</p> <p>③ 고용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</p> <p>④ 산재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★</p> <p>⑤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★</p> <p>⑥ 단,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취소·정지처분에 대한 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리·재결한다.★</p> <p>482p</p> <p>I. 서설</p> <p>국가보훈부장관의 일정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/ 국가보훈부장관에게/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)./ 이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여,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제한된다.</p> | <p>481p</p> <p>3. 대량반복적인 업무 분야</p> <p>①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</p> <p>② 국민건강보험금 급여결정에 대한 심판</p> <p>③ 고용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</p> <p>④ 산재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재심사★</p> <p>482p</p> <p>I. 서설</p> <p>국가보훈부장관의 일정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/ 국가보훈부장관에게/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(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).</p> |
| 485~485p III, IV | 개념, 공식-설명 | <p>III 청구이유 유무</p> <p>1. 문제제기</p> <p>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.</p> <p>2. 신의보호원칙의 요건</p> <p>3. 소 결</p> <p>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/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함으로써 신청인 甲의 권리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.</p> <p>② 다만, 관할 경찰서장의 정치처분과 관련하여, 청구인 甲은 정치처분이 아닌지를 이미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, 청구인 甲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정치처분을 신비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.</p> <p>③ 결국 신의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취소처분은 적법하다.</p> <p>IV 결론</p> <p>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.</p> | <p>III 청구이유 유무</p> <p>1. 문제제기</p> <p>甲의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는 행정행위 철회 사유의 존재 여부와 철회의 제한으로서 신의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.</p> <p>2. 행정행위의 철회사유</p> <p>(1) 운전면허정지처분 철회의 적법성</p> <p>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(철회)의 의미를 포함한다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(대판 1990.02.23. 89누7061). 따라서 철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는 것은 위법하다.</p> <p>(2) 소 결</p> <p>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은/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[별표 16]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되어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/ 적법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철회사유가 존재하지 않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.</p> <p>3. 신의보호의 원칙</p> <p>(1) 문제점</p> <p>甲이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신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철회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甲의 신의에 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문제된다.</p> <p>IV 결론</p> <p>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.</p> |

| 위치 | 오류유형 | 수정 전 | 수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|
| 485~485p III, IV | 해설 | <p>III 청구이유 유무</p> <p>1. 문제제기</p> <p>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.</p> <p>2. 신의보호원칙의 요건</p> <p>3. 소 결</p> <p>① 위함: 지방경찰청장이/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함으로써 신청인 甲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. ② 다만, 위함: 경찰서장의 정치처분과 관련하여/ 청구인 甲은 정치처분의 아님을 이미 알거나 충분한 사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./ 청구인 甲에게 관할 경찰서장의 정치처분을 신뢰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. ③ 결국 신의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관함 지방경찰청장의 취소처분은 적법하다.</p> <p>IV 결론</p> <p>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.</p> | <p>III 청구이유 유무</p> <p>1. 행정청의 신청조지: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청조지에 해당한다.</p> <p>2. 보호가지 있는 사람의 신뢰: 사안은 사후에 신청조지가 법정될 것을 사건이 예상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사건의 사위나 사건과 동시에 사용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甲의 신뢰는 보호가지가 있다.</p> <p>3. 신의에 기초한 사건의 처리: 甲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신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였다.</p> <p>4. 인과관계: 甲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다.</p> <p>5. 신행조지에 반하는 후행처분: 관함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신행조지에 반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.</p> <p>(2) 소 결</p> <p>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甲의 신뢰는 보호가지 있고, 즉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을 것이다./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/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/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해 철회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함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.</p> <p>(3) 소 결</p> <p>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甲의 신뢰는 보호가지 있고, 즉 운전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을 것이다./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/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/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당시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에 되어 이를 수 없어(대판 2000.2.25. 99두10520). 따라서 甲의 신뢰에 반하여 관함 지방경찰청장이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.</p> <p>IV 결론</p> <p>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.</p> |

제2장 행정심판법 485

제2장 행정심판법 485

일부 정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수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.
특별행정심판의 종류와 관련된 정오사항임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